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14.

발 의 자 : 최종윤 · 김민석 · 김성주
김승원 · 남인순 · 양경숙
이원욱 · 조오섭 · 최혜영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중단 해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

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제13조)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제2항에 따라”를 “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3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2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

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제3호 중 “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를 “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해외작업장에”를 “해외작업장(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3의2.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중단 잠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 또는 축

산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</p> <p>2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대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</p>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,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,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

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-----
제2항제2호에 대하여-----

⑤ -----

제3항 및 제4항-----

⑥ -----

제3항 및 제4항-----

제5항-----

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<신설>

- 4. ~ 6.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) ① 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
- 3. -----

-----하는 경우

3의2.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·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-----

 -----해외
작업장(제1항제3호에 대하여
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
업장은 제외한다)에-----

④ -----

제2항 및 제3항-----

④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 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,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⑤ -----

-----제2항 및 제3항-----

-----제4항-----

-----.